

제301회 임시회
2011. 6. 23.(목)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김영주 의원의 6인

(김영주, 박문희, 정 현, 김재종, 김동환, 이광희, 장병학)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5일
-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, 이 조례에서 도지사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제외한 것은 도지사를 법률에 의한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삭제한 것이므로
- 교육감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을 도지사과 같이 삭제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관계공무원의 범위 일부 삭제(안 제2조)
 -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“교육감”을 삭제

5. 검토의견

- 김영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·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3항에서 “지방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법 체계상 교육감은 교육·학예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, 동 조례는 “관계공무원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, 교육감을 “관계공무원”의 범위에 넣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,
- 안 제2조(범위)의 내용 중 “교육감”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”를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으로 하고, 제1호를 삭제하며,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로 하고, 제4호 중 “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5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, 제6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범위)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----- -----</p>
<p>1. 교육감 2. ~ 3. (생략) 4. 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 의장(교육장) 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 7. (생략)</p>	<p>(삭제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의장(교육장) 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6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·학예사무의 관장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그 밖의 학예(이하 "교육·학예"라 한다)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사무로 한다.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자치단체의 장" 또는 "시·도지사"는 "교육감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사무"는 "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"로, "자치사무"는 "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"로, "행정안전부장관"·"주무부장관" 및 "중앙행정기관의 장"은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본다. <개정 2008.2.29>

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[법률 제 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제18조(교육감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·도를 대표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21조(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